

揭示板

(※ 本欄에 揭示된 事項은 全會員이 熟讀하시기 바람)

會費滯納會員께 協助要請

▲ 本會事務局에서는 運營難을 打開하기위해 지난 7月 29日 會費체납 23개 단체회원 및 539명의 일반회원에 체납회비청구서를 발송협조를 바랐다.

▲ 支部에 소속되지 않은 會員여러분은 會誌 “국립공원”의 「協會案内欄」下端에 언제나 수록되고 있는 本會체신부 온라인 計座番號(보통 010017-0053096한 국립공원협회장)로 송금하시면 姓名이 자동기록 되므로 즉시 수납하여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만약 “영수증”이 1주일이상되어도 도착안될시는 “무통장입금표”사본을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過去銀行온라인送金時는 姓名이나오지 않았는데 그當時送金會員中會費를 納付했음에도 이번엔 請求받은 分中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은 送金證寫本을 보내주시면 會費台帳을 정리하겠습니다.

▲ 信託銀行 온라인송금分=’86.12.8. 1만원×2인 △ ’86.12.31. 1만원×1인 △ ’87.3.20 2만원×1인 △ ’87.3.26. 2만원×1인 계 7만원 계 7만원 6인

※ 위와같은 사유로 회비 송금은 체신부(우체국)온라인으로 고정시킨것임.

’89부터 本會에 國庫支援케

崔건설부장관의 強力育成意志로

崔同燮건설부장관은 복지사회를 지향한 국립공원운동의 중대성과 공원운동자원봉사자의 국제적인 조직체로서 대내외홍보·계도·교육·연구활동을 17년동안 어렵게 추진하고있는 韓國國立公園協會의 활성화를 위해 ’89년 건설부예산편성에 본회국고보조금으로 1억원을 요청했다. 경제기획원예산당국의 오랜 심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9월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이송될 예정인데 내무부산하의 자연보호단체나 환경청산하의 환경보호단체와 비교할때 본회의 재정은 비교도안될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까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일

은 없었다. 이번 崔同燮건설부장관님의 강력한 협회육성의지 표명은 앞으로의 국립공원운동에 보다 획기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굳은 각오로 분발해야 할 것이다.

名譽管理人委囑事務 늦어

관리公團의 운영규칙제정 등으로

명예예산관리인 위촉업무가 시작되자 본회는 ’87.12.2. 제 1차로 본회 임직원과 대의원등 60명을 신청. ’88.1.22. 그중 33명분을 발급받았으며 지난 2.9. 17차정기총회서 배포예정오 기간회원 385명을 2차로 신청한바 있었다. 自然公園法 36조의 3에 따라 ’81. 1.6. 건설부령 제282호로 시행된 건설부시행령규칙제 15조 4의 3. 명예관리인 자격규정(法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國立公園協會의 會員)에 의해 위촉신청한것이다. 본회분의 발급에 앞서 국립공원 관리공단분부와 각관리소별 해당구역의 공원관리분야전문인과 승려·산악인등에 위촉이 진행되었기에 본회는 건설부장관의 권한 대행기관이 관리공단의 사무적인 혼란을 돕기위해, 그동안 학계회원은 물론 각지부장의 불평에 대해 학술세미나 준비등 애로를 이유로 협조를 당부했었다. 그러던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88.6.22. 다음 내용이 포함된(공단규칙 17호) 「名譽管理人運營規制」을 마련하였기에 게시한다.

◇ 제 2 조 (선정기준)에 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이사장이 委囑하는 명예관리인은 自然公園法시행규칙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중에서 다음기준에 따라선정한다. 1. 국립공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직원. 2. 자연공원의 보존·보호·육성과 관련되는 학문(임학·생태학·조경학및 공원시설·문화재보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자및 자연보호운동자·전문산악인·독립가등 또는 이러한 분야의 실무종사자. 3. 국립공원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원관리상협조가 요망되는 당해지방의 유지 또는 지도급인사중 당해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자 4. 국립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승려 5. 한국국립공원협회본부및 지부의 임원 6. 기타공단이사장이

공원관리 및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 명예관리인은 다른사람을 계도하고 설득권고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을 감안하여 남자는 만 30세이상, 여자는 만 40세이상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 1 항 제 2 호의 학문연구자는 만 20세이상으로 하며 제 1 항 4 호의 승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공단규정 5. 는 상위규칙인 건설부시행규칙 제15조 4의 3을 도의시한 것이므로 이에대한 협의와 운영의 묘를 위한 확고한 공단 측의 판단에 따라 이미 관리사무소장의 추천등으로 발급된 회원을 제외한 296명분을 지난 9월 9일 발급받아 본회회원은 본회사무국에서, 지부회원은 지부장경유(명예관리인대장비치) 배포토록 발송하였다. [別項: 活動範圍등 업수]

3次分 年內申請豫定

지부창립이 안된 지역의 회원들께도 지부창립 준비완료 즉시 신청되며 누락된 회원은 연내에 일괄 신청할 예정이오니 배전의 활동과 해량을 바랍니다.

명예관리인 주요 운영규칙 遵守要望

名譽管理人으로 위촉된 會員은 本會定款第6條(會員의 權利義務)와 다음의 名譽管理人運營規則 6條~8條를 遵守할것.

▲ 第6條(활동범위) 명예관리인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립공원에 자연자원을 보존·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다른사람을 啓導 ②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의 不法行爲(시설물의 무단설치와 훼손·動植物의 採取와 搬出·山火위험행위·자연훼손행위·汚物투기행위등 환경오염행위와 소란행위)를 制止, 또는 告發하거나 公園管理事務所에 通報 ③ 국립공원의 管理·運營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을 공원관리청에 제시(註: 本會會員은 協會長경유) ④ 기타 국립공원의 發展과 개선에 관한 사항

▲ 第7條(운영) ① 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명예관리인의 入場者數를 파악하여 日·月·年別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필요한 경우 명예관리인증과 기타신분증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할수 있다.

▲ 第8條(명예관리인의 특전) ① 명예관리인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국립공원에 입장할 경우 입

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명예관리인으로서의 활동이 남보다 탁월하고 그 활동이 공원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認定될 경우 人事委심의를 거쳐 적절한 포상을 할수 있다.

會員證更新 및 新規發行

회원증 회원證 有効期間이 경과된 분은 지부가 설치된 곳은 지부장(사무국장) 경유 일괄 구증과 증명사진 1매, 본회소속회원은 직접 본회사무국장앞으로 신청할 것.

중진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고참회원께서는 현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지부명 등을 기재한 회원증교부신청서에 증명사진 2매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名譽管理人證受領證에 關하여

각지부장(사무국장참조)께서는 지난 9월21일 본회가 발송한 명예관리인증을 교부한 후 ① 동봉된 「수령증」을 반송해 주시고 ② 기관장·학계·산악회원중 관리공단에서 직접 교부된 회원분은 회수해서 사유를 적어 반송해 주실것 ③ 이상이 있을 때는 문의바랍니다. (본회소속회원 제외) ※ 현재까지 수령증이 본회 도착된 支部는 내장산 北部지부뿐임.

展示會

▲ 鄭命守韓國自然個人展=8.3~8.18. 까지 서울慶福宮驛展示場에서 열려 연일 自然風景展에 취미를 가진 많은 관람객이 모여 盛況

啓大美大출신의 鄭화가는 國際現代美術選拔展招待作家, 이번展示된 많은 自然風景가운데는 설악산의 四季, 內藏山 秋景, 俗離山계곡, 八公山, 한라산의 봄, 東海의 파도등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絶景을 그린것이 많아 異彩.

▲ 제24회 서울올림픽공식예술판화및 포스터展= 서울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빌딩 1층 「로이드·신미술관(대표신길균)」서· 9.3~10.3까지 개관기념으로 「현대미술과 올림픽」이란 주제로 개최.